



미국 변액연금 신규 판매 부진

최원 선임연구원

- 최근 미국 변액연금 시장의 신규 판매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는 투자환경 악화에 따른 최저보증옵션 관련 준비금 부담 확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최저보증옵션 가격 상승,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 규제 강화에 기인함. 최근 우리나라 변액연금 시장도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등으로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변액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 당분간 변액연금 신규 판매 확대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미국 변액연금 시장의 신규 판매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미국 변액연금 신규 판매 증가율은 2002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연평균(CAGR) 약 9%에 달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변동성 확대로 2012년부터 다시 감소세가 나타나기 시작함.
- 2014년과 2015년 미국 변액연금 신규 판매는 각각 전년대비 3.6%, 5.1% 감소한 데 이어, 2016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8% 감소함.¹⁾

- 최근 미국 변액연금 신규 판매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최저보증옵션과 관련한 준비금 부담 확대, 최저보증옵션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둔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 규제 강화를 들 수 있음.²⁾

- 투자환경 악화로 최저보증옵션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준비금 적립 부담이 확대되고 있어, 보험회사의 신규 판매 부담이 증가함.
- 보험회사들은 저금리로 투자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전보다 높은 가격의 최저보증옵션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2016년 4월부터 모집인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변액연금상품³⁾ 권유 시 신인의무(fiduciary)⁴⁾를

1) LIMRA(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https://www.limra.com/>.

2) A.M. Best(2016. 9), "Variable Annuity Sales Decrease Amid Regulatory Changes", <http://www.ambest.com/>.

적용받게 됨에 따라 모집인의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 유인이 감소함.

- 규제 변경 이전에 모집인은 적합성(suitability)⁵⁾의 원칙만을 적용받아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상품을 권유하면 문제가 없었음.

■ 우리나라 변액연금 시장의 경우 상품 도입 이후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2012년부터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 변액연금은 2003년 도입 이후 증가하고 있는 장수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저축성 상품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2010년까지 연평균(CAGR) 약 55%의 보험료 증가율을 나타냄.
- 그러나 2012년 변액연금 초회보험료가 32.1% 감소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역성장하고 있으며, 전체 변액연금 수입보험료 증가율도 2014년과 2015년 각각 -11.9%, -6.5%를 기록함.

■ 우리나라 변액연금 시장 둔화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변액연금 관련 수익률 논란⁶⁾, 세제혜택 변화⁷⁾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됨.⁸⁾

- 또한, 저금리 및 투자환경 악화로 보험회사의 최저보증옵션 리스크 헤지의 어려움도 확대됨.
- 한편, 최근 변액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⁹⁾도 추진되고 있는데, 동 방안을 통해 판매 관행이 개선되는 동안에는 변액연금 신규 판매 확대의 어려움이 예상됨.

■ 보험회사들은 최근 투자 및 규제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변액연금 시장의 판매 확대 전략보다는 변액연금과 관련한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한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보험회사들은 최저보증옵션 수준을 높이기보다 최저보증옵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
- 소비자보호를 위한 판매 규제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판매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판매 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kiri**

3) DC형 퇴직연금 상품인 401K를 통한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내의 변액연금상품 매입 시 신의의무가 적용됨.

4)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할 의무 또는 부적합한 투자 권유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5)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투자자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하며, 해당 규제 적용으로 모집인은 수수료 공시 등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6) 2012년 4월 금융소비자연맹은 변액연금에 대한 수익률 논란을 제기한 바 있음.

7) 2012년 8월 저축성보험의 세제혜택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세계개편안이 발표·시행된 이후 저축성보험 판매가 둔화됨.

8) 김용희(2014), 「변액보험 발전과정과 시사점」, 『NHERI 리포트』, 제249호, 농협경제연구소.

9) 금감원 보도자료(2016. 6),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